

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253 |
|----------|------|

2018. 2. 27
도시계획관리위원회
수 석 전 문 위 원

1. 제안경위

- 2017. 11. 10 이창섭 의원 발의 (2017. 11. 14 회부)

2. 제안이유

-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, 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기본계획의 원활한 시행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시장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,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(안 제5조제5항 신설).

4. 검토의견

- 이 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

위하여 “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”(이하 “기본계획”)을 수립한 경우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, 이창섭 의원이 발의하여 2017년 11월 14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안임.

- 이 개정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시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를 의무화함으로써 중장기 사업목표 수립과 단기 사업계획 등에 대한 의회와의 정보 공유 및 예산 등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시행의 추진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 사료됨.
- 참고로, 기본계획은 이 조례 제5조1)에 따라 시장이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, 2015년 7월 30일 이 조례가 제정·시행된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어 금년 중 학술연구를 통해 기본계획(안)을 도출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됨.
- 한편, 상위법인 「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」의 개정('17.10.24, 시행 '18.4.25)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은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하고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되었음. 따라서, 국토교통부장관의 기본계획 수립 이후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만을 대상으로 한 기본계획의 수립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됨.

1) 제5조(계획의 수립)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.